

ALL ABOUT PATENT

유·익·한·특·허·상·식

영업비밀의 이해 - I. 개념 및 요건

이홍재 | 특허청 가공시스템심사과

개요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 가려 잊혀진 국제지식재산(IP)권 분쟁이 있다. 다른 아니라 코오롱이 미국 듀폰사의 케블라 섬유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으로 코오롱이 패소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큰 사건이다. 그동안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 보았지만,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한 것은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발간한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관리비법”이라는 책을 근간으로 이번 호에서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즉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 등의 그 개념과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실지 영업비밀 침해행위 사례는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영업비밀의 개념

2.1 영업비밀이란?

‘비밀’이라는 용어는 형법이나 민법 등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통일적으로 규정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예를 들어 ‘우주의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법적 의미의 비밀과는 거리가 있음. 이때, ‘우주의 비밀’과 같은 비밀을 절대적 의미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법률상 비밀은 상대적 의미의 비밀에 속함.

영업비밀도 법률상 비밀이기 때문에 상대적 의미의 비밀임. 따라서 몇몇 사람이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알고 있는 구성원 전원이 비밀유지 서약을 한 경우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에 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함.

2.2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과 정보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업들 간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타인의 노력과 성과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임.

이는 건전한 경쟁질서 형성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임.

2.3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목적

1) 건전한 경쟁질서 형성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타인의 노력과 성과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정경쟁 금지의 법리”를 실현하여 건전한 경쟁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전계약 촉진

새로운 기술 및 경영 정보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비밀누출 가능성을 예방하여 국내 기업 간 또는 국가 간 기술이전을 순조롭게 하여 기술이전시장 형성 및 해당기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다른 유사개념과의 비교

3.1 기업비밀이란?

영업비밀과 기업비밀을 구분 짓는 경우, 기업비밀은 넓은 의미로는 산업비밀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영업비밀을 뜻함.

즉, 영업비밀은 일종의 기업비밀이며, 기업비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임. 하지만,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는 정보인데 반하여 기업비밀은 요건의 충족과는 상관없이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3.2 산업기술이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인증하는 ①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에 따른 신기술, ④ “전력기술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른 신기술, ⑤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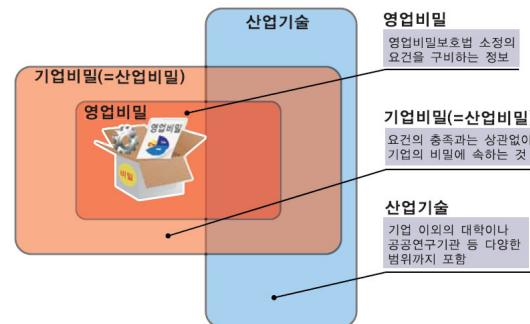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성립 요건으로 하는 데 반하여,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은 이러한 요건을 두지 않음.

또한, 산업기술은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등 다양한 범위까지 보호범위로 하며, 위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도 있음.

3.3 국가핵심기술이란?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이라는 개념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을 뜻함.

3.4 요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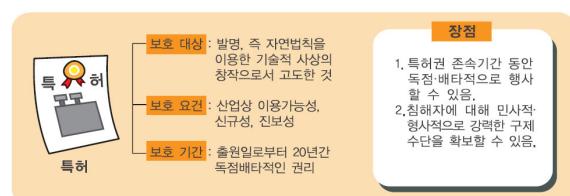


4.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것으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가?

4.1 특허란?

특허법의 보호 대상은 발명임. 여기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뜻함.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때 부여받는 권리가 바로 특허권임.

특허는 이처럼 엄격한 성립요건이 필요하지만 특허권자는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으로 특허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침해자에 대해 민사적·형사적으로 강력한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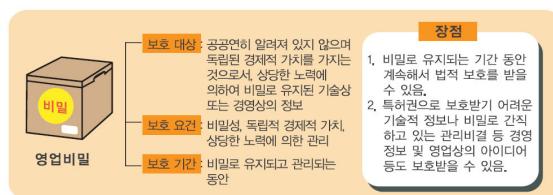
4.2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에 대해서 해당 정보가 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차이가 있음.

영업비밀은 특허권과 같은 엄격한 성립요건이 필요 없고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정보도 포함하기 때문에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예를 들면, 자연법칙과 기초과학상의 발견, 연산법과 수학공식, 화학제품의 미묘한 조합, 온도·성분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 특허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술적 사상 등)나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관리비결 등 경영정보 및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도 보호받을 수 있음.

하지만, 특허와 달리 독점·베타권이 없기 때문에 타인이 동일한 기술을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기술을 개발한 타인이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기존 영업비밀 보유자가 오히려 영업비밀 사용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허보다 보호의 정도는 약함.



4.3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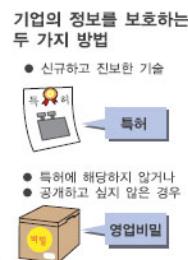
개인이나 법인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술을 발명하거나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만들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게 됨. 왜냐하면, 정보의 종류에 따라 보호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때 어떠한 보호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보의 활용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임.

1) 기술적 정보인 경우

신규하고 진보한 기술인 경우에는 자신의 기술을 공개하고 특허법을 통해 독점베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술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자신만 활용할 수도 있음.

2) 경영상 정보인 경우

기술적 정보가 아니라 고객 명부나 관리 정보 등 경영상 정보인 경우에는, 특허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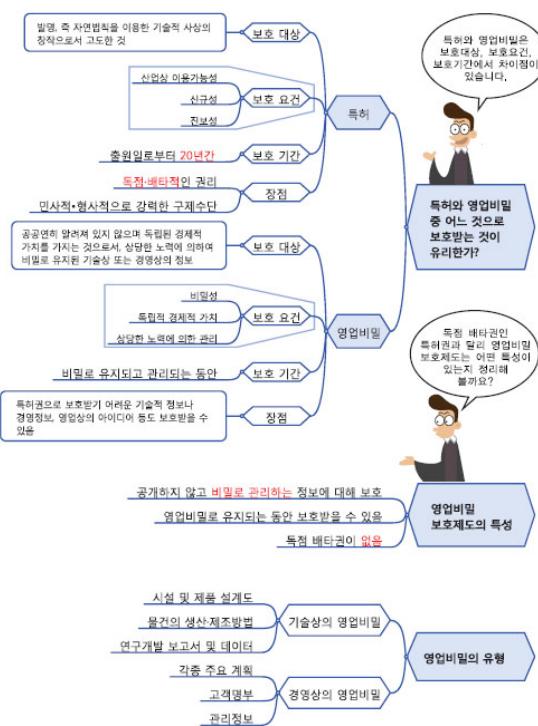
4.4 특허나 영업비밀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자신이 가진 정보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영정보인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지만, 특허로도 보

호받을 수 있는 기술 정보인 경우에는 기술을 외부로 공개하여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 비밀로 관리하며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때는 당해 기술의 종류와 수명, 업계의 수요, 경합기술의 유무, 침해행위의 발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보호 방안을 결정해야 함.

4.5 요약 그림



5.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기업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즉 “비밀성”, “독립된 경제성”, “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임.



5.1 비밀성이란?

영업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이어야 함. 즉,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야 함. 따

라서 이미 해당 산업 내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누구나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 됨. 비밀성의 입증은 침해를 주장하는 자, 즉 영업비밀 보유자가 증명하여야 함.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의 의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란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정보의 내용이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인 것을 의미하며, 정보의 보유자는 정보가 비밀상태(비공지성)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과 시장에서 경쟁 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2) 비밀성은 상대적 개념

비밀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임. 즉, 누구도 알 수 없는 우주의 비밀과 같은 절대적 비밀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를 한정하여 비밀이 유지된다면 충분함. 따라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 간에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거나, 타인이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정보를 갖지 못한다면 비밀성이 인정됨.



3) 비공지성과 관련한 문제

① 역설계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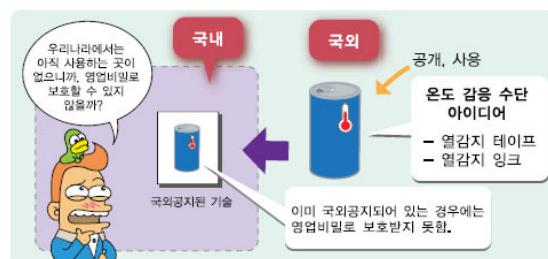
공연히 알려진 정보의 조합일지라도 그 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한 쪽 업체의 정보가 다른 경쟁사의

정보에 대하여 우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공지성이 인정됨.



③ 국외 공지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음.



5.2 독립된 경제적 가치(경제적 유용성)란?

1)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의미가 없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종교적인 교의를 담은 비밀문서는 순전히 영적인 가치에 관한 것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함. 전혀 실현 가능성성이 없는 정보 또한 마찬가지임.

이때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2) 영업비밀 그 자체가 경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함은 영업비밀 그 자체가 경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즉,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원칙적으로 비

밀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경쟁자가 그 정보가 비밀로 지켜지기 때문에 현실적이건 잠재적이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됨. 따라서 바로 영업 활동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도 영업비밀이 됨.

3) 위법한 정보는 보호되지 않음

위법한 정보, 예를 들어 뇌물 정보나 스캔들 사실과 같은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음. 다만,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음.

4)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

①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판매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혹은 경쟁자에 대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됨.



②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할 때

정보의 취득사용에 있어 대가나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혹은 정보의 독자적인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할 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됨.



물론 기업이 어떤 정보의 개발을 위하여 비용이나 시간이 투자했다는 사실은 그 정보가 상업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증거가 되는 동시에 그 정보와 관련한 침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것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는 않음.



소극적인 정보라도 사업활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함. 예를 들어 장기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 연구나 실험결과를 통하여 어떤 공정이 유용하지 않다는 정보 역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험을 생략하여 연구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함. 같은 이유로 실패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음.

5) 정리

즉,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보, 실패한 데이터도 사업활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음.

5.3 비밀관리성이라?

1)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함. 이때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2) 관리를 위한 노력의 정도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의 정도는 상대적임. 예를 들어 창으로 침입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정도만으로도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서류를 자유로이 열람하는 사내의 종업원에 대하여서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서류에 비밀표시를 붙여 두던지, 라커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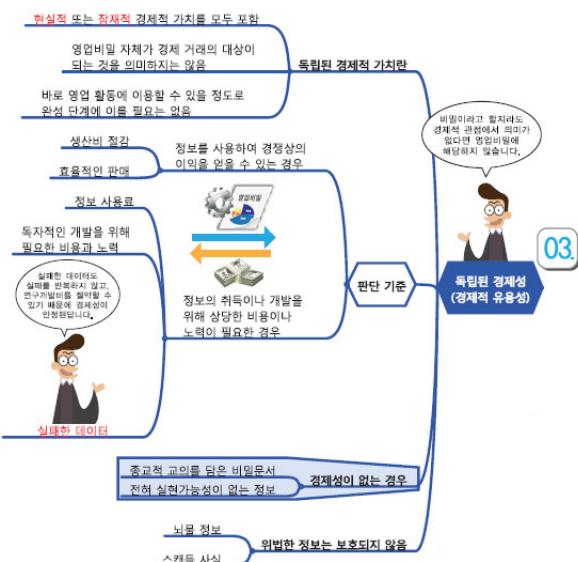
이에 따라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판단할 때에 기업의 규모를 고려함. 즉 기업 규모에 비추어 과도한 정도의 비밀관리 노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밀관리 노력조차 취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 노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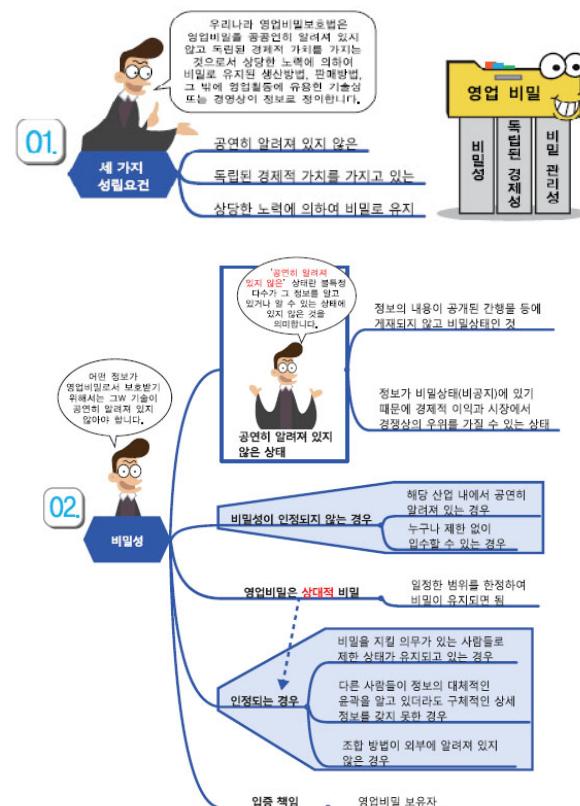
그런데 영업비밀의 관리 정도에 대해서는 법원은 최근 비밀관리성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법원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의도적(주관적)으로 기울일 것을 요구함. 예를 들어 단순히 취업규칙에 직원들의 업무상 취급정보와 그밖에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만으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실제 다투어지는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함.

그리고 위와 같은 주관적 의지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비밀의 관리 여부가 나타나야 함. 때문에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한정하는 대인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을 위한 특정한 구역을 설정한다거나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관리가 필요함.



5.4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요약 그림



6. 결론 및 시사점

2012년에는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건, 2014년에는 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건 등 우리에게도 영업비밀에 관련된 큰 침해소송이 제법 눈에 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영업비밀의 기초적인 개념, 특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호에는 영업비밀의 침해소송 및 그에 따른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 분쟁에 관심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 본고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